

●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6-3호

「전파법」 제21조(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) 제5항에 따라 무선국(무선측위국)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(고시대상무선국) 및 제35조(무선국의 고시사항)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2월 13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무선측위국_(주)더라인이엔씨_개설허가

1. 허가연월일, 허가번호, 시설자의 명칭, 무선국 종별

허가연월일	허가번호	시설자 명칭	무선국 종별	비고
2026.02.10.	55-2026-10-0000001	(주)더라인이엔씨	무선측위국	

2. 무선설비의 설치장소, 호출명칭

허가번호	설치장소	호출명칭(부호)
55-2026-10-0000001	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82	더라인화성측위

3. 주파수, 전파의 형식, 점유주파수대역폭, 안테나 공급전력

허가번호	주파수	전파 형식	점유주파수 대역폭	안테나 공급전력	비고
55-2026-10-0000001	457.175 MHz	8K50G1D	8 kHz	4 W	